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20373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203733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9가합1150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주현, 유한석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도엽

변론 종결 2022. 8. 17.

판결 선고 2022. 9. 7.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9가합11504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에게, ①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693,174,000원¹⁾ 및 이에 대해 2019.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B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피고 D은 3억 원 및 이에 대해 201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356,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356,750,000원 및 그중 3억 원에 대해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대해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3쪽 13행의 "피고 B은"을 "피고 B은 2012. 1.경 국내외 관광 알선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주도 관광 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 회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임행위 등을 저질러"로 수정하고, 3쪽 표 안의 2행 다음에 "가. 상품 대금 관련 배임행위"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6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의 고소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피고 B와 피고 C의 휴대전화 및 은행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 C이 피고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그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수령하거나 함께 소비해왔다고는 하나, 피고 C 본인은 2012. 7.경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N 주식회사에 재직하며 상당기간 주말 부부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이 제주도 관광객을 모집하여 업체와 연결해주는 개인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는 것인데(피고 C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B은 주말이나 야간 등 업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고객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 실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원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의 범행을 고의 내지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원고 본인도 직원인 피고 B이 수년에 걸쳐 10억 원 이상의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 C이 피고 B의 배우자이고 위와 같이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다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의심하고 이를 중단시키거나 그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9행과 마지막 행의 "L"을 "I"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6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D이 작성한 이 사건 제2각서에는 형사책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 대표 I이 작성한 이 사건 제1각서의 내용 중 피고 B의 형사책임 관련 부분은 피고 B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의미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제1, 2각서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작성되었고, 이 사건 제1각서에도 피고 D의 서명이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제1각서에는 명시적으로 '형사책임(횡령 및 배임죄)을 묻지 않기로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지 여부는 원고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협조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제1각서는 피고 B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6억 6,000만원임을 전제로 피고 D이 그중 3억 원을 지급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인데, 그 후 손해액이 많이

늘어났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각서에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및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은 자신이 2019. 6. 30.까지 3억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 2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제1, 2각서 작성 후인 2019. 4. 5.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툼이 벌어지자 원고 측 M가 피고 D 측에게 '나 B 고소할 거니까 당장 나가라. 나 돈 안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을자 제2호증),2)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D은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손해를 변상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D의 입장에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직접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이 2019. 4. 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E에게 증여하는 등 이 사건 제1, 2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보여 피고 B을 고소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측의 형사 고소에 대한 책임은 피고 D 측에게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이 피고 E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 측이 이 사건 제1, 2각서 작성 후인 2019. 4. 5. 피고 B에게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3) 그럴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3억 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우선 피고 E에게 증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아울러 피고 D은 이 사건 제1, 2각서 작성 직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4)), 2019. 4. 15. 제1심 공동피고 O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수표로 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을차 제3, 4호증) 피고 D이 이 사건 제1, 2각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확장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심이 진행될 무렵 G이 원고를 상대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급된 항공권을 취소함에 따라 취소수수료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34,646,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가 G에게 2,75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B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G이 2019. 11. 11.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의 거래관계에서 외상으로 제공된 항공권 발권대금 및 취소수수료 합계 34,646,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제1심 소송 진행 중 법원이 '원고는 G에게 2021. 8. 10.까지 2,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1.자 2019가단20062 결정), 그 결정이 2021. 6. 29. 확정된 사실, ③ 원고가 2021. 8. 10. G에게 2,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청구한 665,674,000원은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손해액 1,183,175,430원에서 피고 B이 변제한 517,501,419원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인데, 위 손해액에는 피고 B의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각된 이후 원고가 G 등에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금 형태로 남아 있던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갑 제21호증, 아울러 G은 위 사건에서 제출한 소장(갑 제28호증)을 통해 원고에게 위 항공권 발권대금 및 취소수수료 34,646,700원을 2019. 6. 7.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G이 피고 B의 범행을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여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2,750만 원이 기존의 청구금액과 별개의 손해라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C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 B의 범행을 고의 내지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영상

판사최항석

판사공도일

별지

- 1) 원고는 제1심에서 이 부분 청구금액을 665,674,000원으로 하였고, 항소취지도 이와 같았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 2) 원고 측 M는 그 후 피고 B와 통화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을자 제4호증).
- 3)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원고 2019. 12. 6.자 소장 및 갑 제13호증의 1).
- 4) 제1심 공동피고 O의 2020. 2. 28.자 답변서